

과태료처분통지서

제		호	
과태료 처분대상자	성명	연락처	생년월일
	주소(주거지)		

귀하께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근거조항	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1항 제1호
과태료금액	

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식재산처장(지방자치단체장)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,
지방자치단체장

직인